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판매 금지 등 〉

■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6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판매 금지 등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7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16

I. 개요

1. 백종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종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4. 15.
- (3) 회 부 일 : 2026. 4.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판매 금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각각 설정등록된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16조 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통보받거나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나 반품·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16조제3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화장품 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 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하 “지식재산 침 해 화장품”이라 한다) 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나.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제1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이 제조·수 입·판매되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이 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 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 환 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 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해외 안전 정보의 수집) ①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 장품 생산·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 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u> <u>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 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생 산·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u> <u>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정보 제공 및 컨설팅</u> <u>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u> <u>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 가 지원</u> <u>5. 화장품의 허가·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u> <u>6. 그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한 사업</u> ②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 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 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수행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u>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현행	개정안
<u>제33조의3</u>(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생략)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6조제1항제1호·<u>제1호의2</u> 또는 <u>제4호</u>를 위반한 자 ② (생략)	<u>령령</u>으로 정한다. <u>제33조의4</u>(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행 제33조의3과 같음) 제36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호의2</u>·<u>제4호</u> <u>또는 제5호</u>-----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영업자·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나 반품·환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을 해외에서 모방·위조한 화장품이 다시 국내에 유입·유통되며 원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원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지식재산권 침해를 판단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나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면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수정, 향후

재발 방지 등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무역행위’라 하여 금지하면서,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무역위원회(산업통상부 소속)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해당 물품의 수입·판매·광고 중지 등)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신속하게 마친 후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 파. (생략)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행위나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지식재산처·무역위원회 등 행정청의 결정이나 조치 등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제1호3)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지식재산처장이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를 신속하게 마친 후 잠정조치 시행을 결정한 경우 등만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판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판명’되었다고 할 것인지가 안 제16조제1항제5호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누구든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어떤 행위가 처벌의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권접권(著作隣接權)·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제7조(잠정조치) 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광고·홍보행위의 중지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대상이 될 것인지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판명’ 주체가 누구인지를 포함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지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판단에는 고도의 기술적·법적 전문성이 요청되지만, 개정안만으로는 그 침해 여부를 판명·확인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관계 기관의 사실관계 조사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식재산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화장품을 통보 받아 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는 경우는 양 기관이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둘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하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행위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적절할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16조제1항제5호가 신설될 경우 「화장품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의 직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식품의약품안전

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⁴⁾

같은 법에서 지식재산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부정경쟁행위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⁵⁾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주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법 제16조제1항⁶⁾에서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생용품 관리법」·「체외진단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8. 지식재산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

라.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마.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6)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의 불법적 유통 행위를 수사하여 왔으므로,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의 판매 등을 수사하는 데 화장품 유통체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는 처벌을 예정하는 권력작용이므로 그 주체 대상이 명확성·전문성 등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하게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목적·내용 등이 부정경쟁행위나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의 수사 분야와 직접적·구체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에 관한 단속·처벌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활발히 수사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 가능한 영역이며, 화장품 등 개별 산업마다 별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중복적으로 규율할 경우 집행과정에서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안은 위조 화장품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식재산처와 협력하여 조치하려는 내용으로, 식약처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과 같은 전문분야를 수사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임.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변조한 것

□ 셋째, 안 제16조제1항제5호는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의 판매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관·진열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의 판매 외에 ‘제조·수입’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이를 확인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자·판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6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화장품법」에서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직접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의 제조·수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각 법률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는바,

「화장품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제 대상인 행위(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의 제조·수입)에 대하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민간의 영업자·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요청을 받은 영업자·판매자가 이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 책무를 「화장품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 유지에 바람직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넷째, 안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에 규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378호)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82호)과 그 목적·내용 등이 중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378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외 화장품 인허가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화장품관리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82호)에서는 정부가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에 대한 해외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⁷⁾

그런데, 안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면서,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개정안에 따른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지원이 목적·내용 등의 측면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건의 법률안과

7) 대안반영폐기: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798호) 및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177호) 등 2건

유사·중복될 소지를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302호로 공포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이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안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2026년 12월 31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⁸⁾

2026년 4월 28일 법률 제21604호로 공포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제36조제1항제4호가 개정되어 2027년 4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의 심사 경과 및 공포 시기 등에 맞추어 개정문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

아울러 안 제16조제3항 전단의 “사이버몰”이 현행법 제2조제13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¹⁰⁾’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안 제16조제3항 전단의 ‘사이버몰’과 제2조제13호의 ‘사이버몰’의

8)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4조의2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3제1항”에 관한 부분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 호 생략)

9) 「화장품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법률 제2160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2026. 4. 28. 공포 2027. 4. 29. 시행>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10)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의미가 서로 같다면 제2조제13호에서 ‘사이버몰’의 의미가 이하 조문에서도 같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 제1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침해는 것으로”는 오기에 해당하므로 ‘침해하는 것으로’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용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벌칙을 포함한 명시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의 유통 정보를 모니터링할 필요성 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 (지식재산처) 신중검토

(법체계 혼란)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에 관한 단속·처벌은 현행 지식재산 보호·집행 체계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이 가능함.

-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는 이미 지식재산처 특별 사법경찰이 전문성에 기반하여 활발히 수사하고 있는데,

화장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판단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화장품만을 위한 별도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체계를 중복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고, 집행 체계를 각 산업 분야별로 분절할 경우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가 파편화 되고 집행중복·혼선이 우려됨.

(전문성 결여)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은 고도의 기술적·법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지식재산처 등 전문기관의 판단을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문구상 지식재산권 침해 판명·확인 주체가 불분명한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오판에 따른 제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장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그 판명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일반 소비자나 소상공인 또는 온라인 판매자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개별 법률에 권리구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화장품법」에 별도 형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 제16조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조치가 경우에 따라 영업자·판매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